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46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박정현ㆍ이기헌ㆍ김남근

박홍배 • 박희승 • 황정아

윤건영 · 서미화 · 허 영

송재봉 • 이용선 • 이용우

전혀희 · 임호선 · 민병덕

서영교 • 서영석 • 이학영

위성곤 · 김영환 · 김성환

박균택 • 복기왕 • 김주영

김성회 · 정진욱 · 안호영

김민석 • 이재관 의원

(2991)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노동조합 참여의 철저한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인사, 지방공사·공단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대표성 및 민주성의미흡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조치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며,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비상임이사는 노동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은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응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
- 나.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당 공사, 공단에 두고 위원 임명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 체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지방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로 변경함(안 제78조의6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59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사람은"을 "사람과 제8항에 따른 노동이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동이사"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⑨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의 노동이사 정수는 2명 이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노동조합원인 노동이사는 임명된 이후에도 조합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8조제10항(종전의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은 공개모 집 절차에 응할 수 없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58조에 따라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사장의 연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그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2. 해당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4. 공사의 노동이사 1명(노동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58조의2"를 "제58조의2, 제59조의2"로 한다. 제78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이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4. 기관의 공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한 다.

제78조의5제1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되다.
-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명
-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공무원 2명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2명
- 4.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2명
- 5. 지방공기업의 운영 개선과 지배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사람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의6의 제목 중 "의견청취"를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주민참여"로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예산 편성, 운영성과 보고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 개선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진단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 및 제7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해산을 요구하려는 경우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②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③
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u>대통</u>	<u>제59</u>
<u> </u>	조의2에 따른
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	
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	7
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u>사람은</u> 제외한다)는	<u>사람과 제8항에 따른</u>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노동이사는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8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 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u><단서</u> 신설>

<신 설>

______.

⑧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동이사"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⑨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의 노동이사 정수는 2명 이상으로 하며, 해당 공사의 노동조합원 인 노동이사는 임명된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u>10</u> -----

제59조의2(임원추천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① 제58조에 따라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 고, 사장의 연임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관련 직능단체에서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2. 해당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명
-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4. 공사의 노동이사 1명(노동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임원추 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2
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	
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	
항, 제57조, 제58조, <u>제58조의2</u> ,	<u>제58조의2,</u>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	제59조의2
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	
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	
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	
채"로 본다.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생 략)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	②
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	
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u>행정안전부장관</u>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지방자치</u>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

1. ~ 3. (현행과 같음)
4. 기관의 공익성에 문제가 발
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공
<u>기업</u>
<u>5</u> .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
<u>치단체의 장</u>
<u>지방자치</u>
단체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이 명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
한 해산 요구) ①
<u>심의·의결을</u>

- 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 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개 선에 관한 사항을 <u>심의</u>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 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 ② (생략)

<신 설>

	1.	~	3.	(현] 행	과	같	음))			
	2	(ক্	현 행	과	같	음)						
제	78	조	의 5	5(ス	방	공	기	업	정	책	위	원
	회)	(1) -									
							<u>심</u>	의	•	의	<u>결</u>	
					-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 사람이 된다.
-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명
-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 천하는 지방공무원 2명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

<신 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의 방법 · 절차와 그 밖에 필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 하는 2명

- 4.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 원회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가 추 천하는 2명
- 5. 지방공기업의 운영 개선과 지배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시 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4 명 이내의 사람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정한 사항 외에 지방공기업정책 위원회----.
 - 제78조의6(주민 등의 참여) ① (현 행과 같음)
 - ② 지방공기업은 예산 편성, 운 영성과 보고 등 기관 운영과 관 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참 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주민참여----

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	
다.		